

외국인을 위한

범 죄 예 방 가이드



목차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범죄	02
생활 속 범죄예방 및 대응 요령	05
범죄 신고 요령	09
도움 요청 전화번호	13
체류 외국인 지원 정책	15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범죄



01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 폭행·상해·협박·체포·감금·강요·공갈 등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습니다.
- SNS상 '흉기사용 등 살인예고' 글을 게재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02 마약류를 소지·투약·제조·밀반입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받으며,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 함
- 경찰청은 ◇ 불법 마약류 공급 사범 ◇ 외국인 마약류 사범 ◇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제우편·소포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03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결코 승부를 겨루는 일은 도박행위 이며 처벌 받습니다

- 또한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도박행위에 준하여 더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04 불법 촬영, 성 착취물 전송 등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①인터넷·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불쾌감·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을 전송하는 행위 ②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유포하는 행위 ③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05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이며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범죄

06 길에 세워진 자전거 등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가져가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7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해외 송금행위는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08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위반 시 벌금(100만원 이하)이 부과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이려고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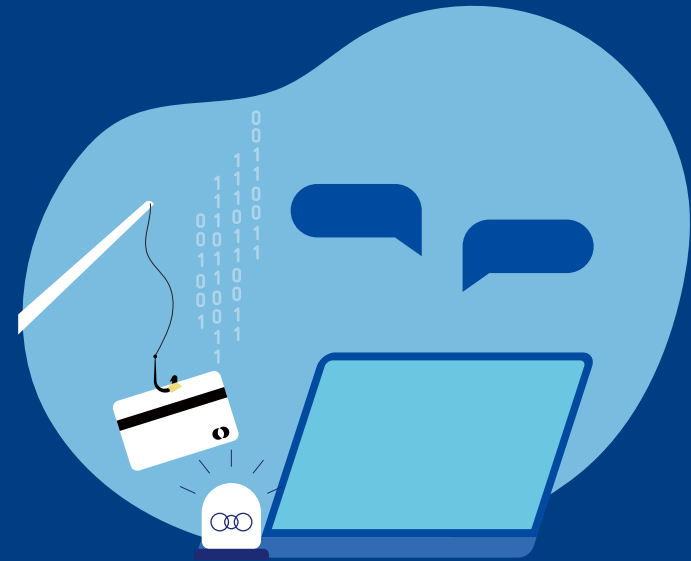
09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자동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운전시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헬멧) 미착용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는 처벌 받습니다.
-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10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담배꽂초,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금연장소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를 건널 때는 육교나 횡단보도(녹색신호)로 건너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는 등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고의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속 범죄예방 및 대응 요령



01 사기(불법 다단계 판매, 전화금융사기, 스미싱, 인터넷사기 등)

- **전화금융사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대표적인 금융사기입니다.

- 계좌이체·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계좌·카드·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 피해를 당했을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기관으로 연결하여 임시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기단의 하부조직인 현금인출책, 콜센터 텔레마케터 등의 역할도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Voice Phishing 피해 사례

- 가족(자녀)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유도하여 납치했다며 속이고 돈을 요구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및 개인정보 유출 명목으로 돈을 요구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
- 카드사·통신회사 사칭하여 대금 연체 빚자하며 돈을 요구

- **스미싱** |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일 등)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 지인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확인하고,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 **인터넷 거래 사기** |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는 물품을 보내는 방식의 범죄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거래 전 상대방의 정보(전화·계좌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사이버캡(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검색하거나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불법다단계** | 일반적인 도·소매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이 되어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강제구매·대출 등을 유도하거나 상품이 고품질인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비싼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물품 구매 및 해당 업체가입을 거부하세요.

등록된 합법 업체 여부 확인 문의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1670-0007(유료) |
| - 직접판매공제조합 | www.macco.or.kr, 02-566-1202 |
|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www.kossa.or.kr, 02-2058-0831~8 |

02 가정폭력

- **가정폭력**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포함해 친척·이웃·친구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진·진단서 등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여성단체·쉼터 등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상담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03 성폭력

- **성폭력**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언어·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에 신속히 신고해 주세요.
(신고전 씻지 않고 입었던 속옷과 옷을 그대로 보관할 경우 범인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 주변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주고, 경찰에게 반드시 신고합니다.
- 경찰외에도 '여성긴급 상담전화(1366)', '다누리 콜센터(1577-1366)'에 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성적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협박·강요로 촬영하거나,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당할 경우 증거자료를 삭제하지말고 저장하여 경찰에게 피해사실과 함께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04 교제폭력

- **교제폭력** | 교제하는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폭력도 교제폭력에 포함됩니다.

· 교제폭력을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포함해 친척·이웃·친구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05 학교폭력

- **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시 주저하지 말고 즉시 선생님·부모님·경찰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위험한 장소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6 실종아동 예방

- **실종아동** |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 낯선 사람이 잘 아는 척하며 데려가거나 또는 강제로 데려가려고 할 때는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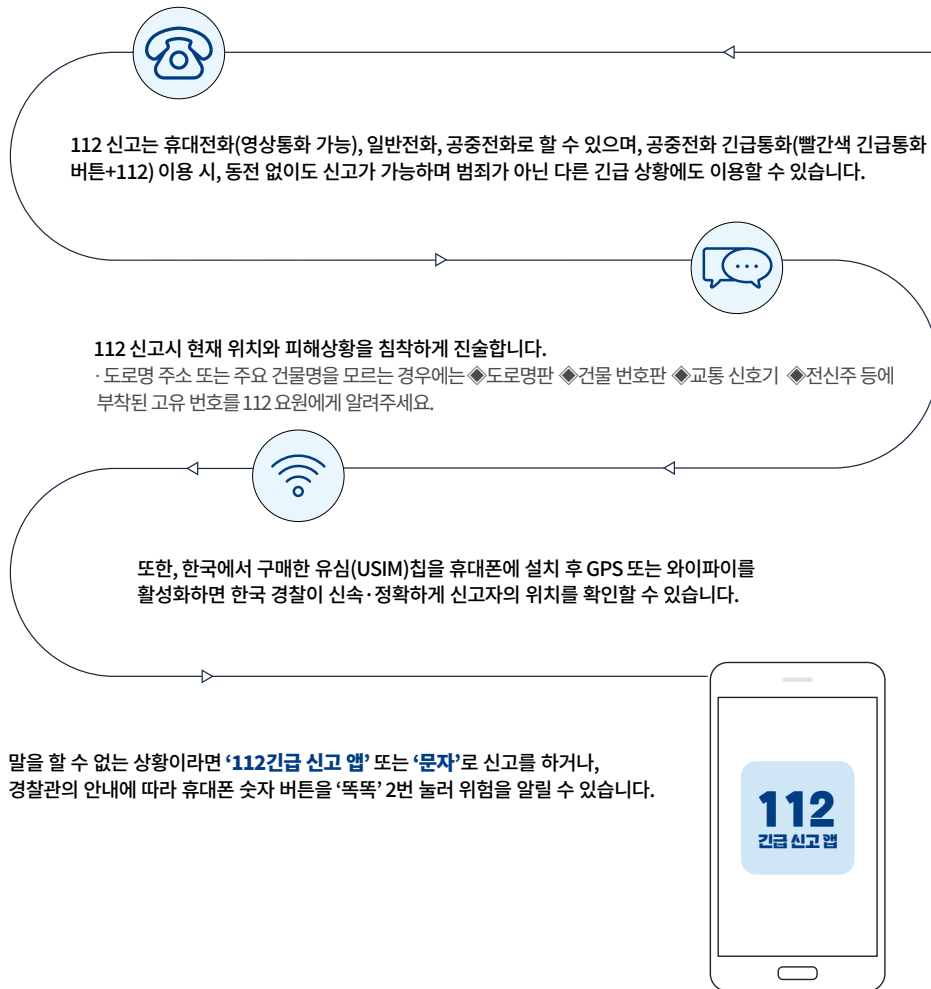
· 아이에게 본인 이름·나이·주소·전화번호·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외출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 둡니다.

· 특히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아동의 신체 특징 등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 요령



01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112로 신고하면 경찰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범죄(피해)신고 및 민원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경찰관-통역요원-신고자 3자 통화 방식 통역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시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기관	상세 내용
경찰청 112통역	· 주관부서 : 경찰청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평일 09~21시, 영어 (02-6150-1101), 중국어 (02-6150-1102) · 통역언어 : 영·중 (2개어)
관광통역 안내전화 (1330)	· 주관부서 : 한국관광공사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영·중·일 24시간 / 기타 5개어 08~19시 (365일) · 통역언어 : 영·중·일·러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 ·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8개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영·중·베·필 24시간 / 기타 9개어 08~21시 (365일) · 통역언어 : 영·중·일·러시아·베트남·태국·몽골·필리핀·캄보디아·우즈벡·라오스·네팔 (12개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	· 주관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 / 영·중 09~22시 / 기타 17개어 09~18시 (평일만) · 통역언어 : 영·중·일·러시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캄보디아·아랍·네팔·프랑스·스페인·미얀마·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독일 (19개어)
BBB코리아 (1588-5644)	· 주관부서 : 비영리 사단법인 (민간) · 운영시간 : 3자 통화 가능(앱) / 24시간 (365일) · 통역언어 : 영·중·일·러시아·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몽골·아랍·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스웨덴·폴란드·이탈리아·독일·터키·인도·스와힐리어 (20개어)

도움 요청 전화번호



도움 요청 전화번호

범죄 신고 및 긴급전화	
범죄 신고 (경찰청)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청)	117
화재·응급환자·긴급구조 신고 (소방청)	119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KISA)	118
여성 긴급 상담 전화 (여성가족부)	1366
다누리콜센터 (여성가족부)	1577-1366
기타 생활민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법무부)	1345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행정안전부)	110
외국인 관광 안내 (한국관광공사)	1330
인권침해 진정·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129
청소년 사이버 상담 전화 (여성가족부)	1388

체류 외국인 지원 정책



체류 외국인 지원 정책

01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체류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도 강제퇴거 없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경찰은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대상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상의 범죄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특별법상의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등

※통보의무 면제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상담(운영시간 평일 09:00~22: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